

# [ 변경 대비 표 ]

## ■ 변경 집합투자기구 및 변경 서류

편      드      명	BNK이기는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
변      경      서      류	집합투자계약
변      경      사      유	-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사항 반영
효      력      발      생      일	2024년 12월 05일

## ■ 변경대비표

항목	변경사유	변경 전	변경 후
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	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사항 반영	①~② (생략) 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. 1.~12. (생략) 13. Class S-P 수익증권 :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<u>집합투자증권</u>	①~② (현행과 동일) 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. 1.~12. (현행과 동일) 13. Class S 수익증권 : <u>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S수익증권(종류S-T 및 S-P수익증권 포함)를 취급하고,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종류 수익증권[가입 자격(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)에 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]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,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수익증권</u>
제20조(한도 및 제한의 예외)	오기정정	① 다음 --- (생략)--- 한다. 1.~2. (생략) 3.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(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) 4.~5. (생략) ②~④ (생략)	① 다음 --- (생략)--- 한다. 1.~2. (생략) 3.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(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) 4.~5. (생략) ②~④ (생략)
<부칙>	-	<신설>	< 부 칙 5 > (시행일) 이 투자신탁은 2024년 12월 05일부터 시행한다.

<끝>